

2009. 4. 15.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의안발의 서명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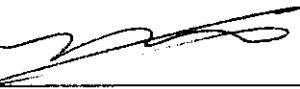
2.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김병룡 의원 (~~서명~~ )

의 4 인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김영종		
김영섭		
김영화		
김영장		
김종기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328
------	------

발의연월일 : 2009. 4. 15.
발 의 자 : 김병룡의원외 4인

1. 제안이유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 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및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에 대한 자금 지원, 농업기술, 경영 교육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귀농인이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제천시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1년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귀농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제천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3조)
- 귀농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제6조)
- 귀농인에 대한 의료지원 및 자녀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제8조)
-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3. 제정안 : 불임

4.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제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제천시로 이주하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1년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제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 · 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단, 귀농 당시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4. “타 지역”이란 제천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제천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대책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료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 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보전·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교육·주택·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금 지원 및 농업 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정(農政)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② 제1항에 따른 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시·군·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5조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농지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54호]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